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4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김병노	59.11.15	과태료 부과처분	이수기한 내 교육·훈련 미이수

2. 법적근거

-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[별표 11]

3. 유의사항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행정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1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,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.

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